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87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국내대리인 지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32조의5 제2항 등)	10
3. 국내대리인의 업무 확대 등(안 제32조의5 제1항 제2호의2 신설 등) ...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6. 26.

다. 회 부 일 : 2025.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 32조의5제1항 후단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2조의5제2항 후단, 제3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5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함¹⁾²⁾.
 - 국내대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신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수행함.
 - 2025년 4월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는 총 46개 사(社)임³⁾.
- 이러한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용자가 해외사업자에게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1)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를 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3) 각 사업자별 지정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이 중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관되어, 현재는 자료제출 의무만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로 남아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어,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또한, 최근 해외 플랫폼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 등 온라인상 범죄의 매개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등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등의 문제가 있어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를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변경 시 정보 공개 및 통보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대리인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실제로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국내대리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절차가 없어 관계부처의 관리가 곤란한 점,

국내대리인 정보의 표시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제도 활용이 어려운 점, 국내대리인이 서류 제출 등의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한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⁴⁾.

○ 다만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에서 제외된 사업자를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지정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등 법률 위반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기존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의무 강화만으로는 제도의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⁵⁾, 실제 의무 이행이 필요한 사업자가 아닌 기존에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여 온 사업자의 의무만 강화되는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사업자단체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이 현재 국내 규제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법 준수를 회피하는 해외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하고, 이미

4) 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현안분석」 23-01, 한국법제연구원, 2023.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24.12.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24.12., p. 64-70.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인 대다수의 기업에게만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따라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정의무자의 범위,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도 변경 시의 기대효과와 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정도, 국내대리인과 지정의무자의 법령 준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대리인은 모두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강화하는 경우 제도 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정의무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내대리인의 업무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대한 물품·서류 제출 (개정안) - 권리침해정보 삭제등 요청 처리 및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정보 조치명령 및 관련 절차 이행 - 침해사고의 신고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 확보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 현황 및 계획 제출 - 이용자 보호 업무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를 위한 자료의 제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개보위에 대한 물품· 서류 등 자료의 제출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 소가 있는 자 (개정안) 지정의무자가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자 - 지정의무자가 설립 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자 (- 지정의무자가 설립 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기타 지정의무자의 의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인터넷 사 이트 등에 공개	(개정안)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을 방통위에 제출 및 위의 사항을 이용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	-	-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 국내대리인에 대한 교육 ·점검 등 관리감독)

구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내대리인 지정 시 방통위에 통보(국내 대리인 변경 시 포함)		
기타 국내대리인의 의무	- (개정안) 지정의무자와 유효한 연락수단 확보	지정의무자와 유효한 연락수단 확보	-
의무이행확보 수단	- 국내대리인 미지정: 2천만원 ↓ 과태료 (개정안) - 국내대리인 지정 후 방통위 미통보 :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위반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관련 사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미공개 :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미지정: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위반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미지정: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위반: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위반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관련 사항 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에 미포함 1천만원 ↓ 과태료)

*괄호 부분은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97호, 2025.10.2. 시행) 내용

- 셋째,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가 변경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새롭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 부칙에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통해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 및 시점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동법 개정안 다수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⁶⁾.

6) 의안번호 제2205754호(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제2209795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제2209806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2. 국내대리인 지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32조의5 제2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지정의무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32조의5 제1항 본문).
- 지정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제2항).
 -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제1호)
 - 지정의무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제2호)
- 지정의무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함(제3항).
 -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제1호)
 -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제2호)
 -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국내 연락 수단(제3호)
- 국내대리인은 지정의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의무자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6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76조 제2항).

- 안 제32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4호의3)
- 안 제32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제4호의4)
- 안 제32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제4호의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u>지정하여야</u> 한다. <후단 신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u>지정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u> -----. <u>국내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현행	개정안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2의2. ~ 2의4.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 <u>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u> <u>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u> <u>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u> ③ ----- ----- -----<u>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u>-----.

현행	개정안
1. 2. (생략) <u><신설></u>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 <u>연락 수단</u>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u> ⑥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 게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⑦ <u>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u>안</u> <u>니한</u> 자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 -----<u>아</u> <u>니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u>---

현행	개정안
<u><신설></u>	<u>4의4.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u>
<u><신설></u>	<u>4의5. 제3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자</u>
<u>4의4. (생략)</u>	<u>4의6. (현행 제4호의4와 같음)</u>
<u>③·④ (생략)</u>	<u>③·④ (현행과 같음)</u>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정의무자가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이 지정의무자와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안 제32조의5 제2항)

- 지정의무자가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인 권한만을 부여받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정의무자가 국내대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⁷⁾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10.2. 시행)⁸⁾은 이미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이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국내 대리인 업무에 더 신속하고 충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 연구결과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법인만 설립하면 다른 요건에 제한이 없으므로

7)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및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9) 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현안분석」 23-01, 한국법제연구원, 2023.6. p. 66, 108-109.

3. 국내대리인의 업무 확대 등(안 제32조의5 제1항 제2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내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의5 제1항).

- 제44조의2에 따른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삭제등”)

요청의 처리¹⁰⁾ 및 안 제45조의4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제2호의2)

- 제44조의7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및 관련 절차 이행¹¹⁾(제2호의3)

10)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생략)

1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

-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의 신고¹²⁾(제2호의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24시간 이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되, 3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생략)

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서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12)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현행	개정안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3.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 삭제등의 요청 처리 및 제45조의4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u> <u>2의3. 제44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및 관련 절차 이행</u> <u>2의4.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의 신고</u>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u>제45조의4(이용자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u> <u>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u>

현행	개정안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불만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하고, 3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 검토사항

□ 국내대리인 업무 확대(안 제32조의5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 안 제32조의5 제1항 각 호는 국내대리인의 업무로 ① 권리침해정보의 삭제등 요청 처리 및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및 관련 절차 이행, ③ 침해사고의 신고에 관한 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불법정보 관련 명령 및 절차 이행이 현실적으로 국내대리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권한은 지정의무자인 본사에 있으며, 지정의무자가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내 법인이 정보의 삭제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¹³⁾.
- 이를 고려할 때 대다수의 국내대리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정보의 삭제 등 조치명령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곤란할 수 있고,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 간의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지거나 업무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임.
- 둘째, 현재 침해사고 대응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내대리인 관리주체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 당시부터 한미 FTA에 따른 현지 주재 의무 금지 원칙¹⁴⁾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절차적 사항 외의 사항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13) 가령 구글의 경우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 권한은 구글 본사에 있고, 구글코리아가 직접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14) 제12.5조(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안 제45조의4 신설)

- 안 제45조의4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의무와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 접수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피해’가 광범위하고, 이 중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관련 절차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예방 및 구제가 필요한 피해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가령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 삭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¹⁵⁾,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전자상거래 피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서 각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¹⁶⁾,

15)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다수가 전기통신사업자에 포함되므로¹⁷⁾,

「전기통신사업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유사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의견·불만 처리절차와 개정안에 따른 절차가 상이하여, 수범자가 둘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되,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반면,

- 개정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공휴일 제외 ‘3일 이내에’ 처리하되, 3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업무 신설을 통해 이용자 불만처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진흥원)는 서비스의 규모나 복잡성, 문제 유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4시간 이내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의견이나 불만 처리를 위해 상당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여 사업자에게

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17)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사소하거나 불필요한 민원 과다로 인한 업무 마비, 촉박한 시간적 제약에

따른 사업자의 대응 미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및 ‘처리’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형식적인 규제 준수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및 ‘처리’의 의미가 불분명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해외사업자의 경우 시차 등으로 인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처리

방식과 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¹⁸⁾ 등 타 법령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개정안에 따른 처리기간이 사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18)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참고: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25.4. 기준)

번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번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1	Adobe	한국어도비시스템즈	24	Roblox	제너럴에이전트
2	Agoda	법무법인 케이씨엘	25	Skyscanner	법무법인 태평양
3	Airbnb	에어비앤비코리아	26	Shein	법무법인 태평양
4	Ali express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27	Snap	제너럴에이전트
5	Booking.com	법무법인 태평양	28	SONY	소니코리아 주식회사
6	Dailymotion	법무법인 광장	29	Sony InteractiveEntertainment	(주)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
7	Epic games	에픽게임즈코리아	30	Sony Music entertainment	소니코리아
8	Expedia	법무법인 대륙아주	31	Supercell	제너럴에이전트
9	Google	주식회사 디에이전트	32	SPOTIFY AB	법무법인 대륙아주
10	Hilton	정병혁	33	Tiktok	법무법인 태평양
11	Hotels combined	법무법인 케이씨엘	34	Trip.com	씨트립코리아
12	Hotels.com	법무법인 대륙아주	35	Temu	제너럴에이전트
13	Hyatt hotel	HYGCC KOREA	36	Tripadvisor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14	Intel	법무법인 화우	37	Ubisoft	제너럴에이전트
15	LINE	법무법인 태평양	38	Zoom	제너럴에이전트
16	Linkedin	제너럴에이전트	39	Canva	제너럴에이전트
17	Marriott International	법무법인 광장	40	Pinterest	제너럴에이전트
18	Microsoft	제너럴에이전트	41	X(구 트위터)	트위터코리아 유한회사
19	Match group	제너럴에이전트	42	Discord	법무법인 울촌
20	Meta Platforms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43	Salesforce	법무법인 케이씨엘
21	Nike	제너럴에이전트	44	Open AI	제너럴에이전트
22	Oracle	한국오라클유한회사	45	Appvestor ApS	제너럴에이전트
23	PayPal	제너럴에이전트	46	Playrix	제너럴에이전트